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학
위논문심사료」 관련 안내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내구성원(학생 및 교원 등)이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 >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국립교육대학교, 국립대학교, 국립대학법인, 대학원대학교, 사립대학교

주무관 **이선명** 행정사무관 **김사옥** 대학학사제도과장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전결 10/12

협조자

시행 대학학사제도과-9880 (2016.10.12.) 접수 총무과-10456 (2016.10.17.)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www.moe.go.kr
교육부 (어진동)

전화 044-203-6250 / 전송 044-203-6485 / sylee229@moe.go.kr / 공개